

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-1058호

「광역교통 특별대책 수립 및 시행 지침」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3년 8월 31일

국토교통부장관

광역교통 특별대책 수립 및 시행 지침 일부개정 훈령안 행정예고

1. 개정이유

광역교통 특별대책 시행 시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한 사전 협의 및 전문기관 검토 절차를 마련하여 변경 시에도 당초 광역교통 특별대책 수립 취지에 부합하도록 제도를 운용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시·도지사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광역교통 특별대책 내용에 대해 경미한 변경 추진 시 특별대책을 이행하는 관계 행정기관 및 개발사업시행자와 협의, 광역교통 개선대책 평가센터의 검토를 거치도록 규정(안 제9조 제2항 및 제3항 신설)
- 나. 광역교통 특별대책은 별도 위임 규정이 없어 검토·심의 등의 주체가 국토교통부장관으로 이를 반영할 필요(안 제8조)

다. 경미한 자구 수정 및 상위 법령과 동일한 내용을 반복하여 규정한
조문 삭제(안 제2조, 제10조)

라. 재검토기한 시점 조정(안 제11조)

3. 의견제출

○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,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9월
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
위원회 광역교통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반의견과 그 사유)

나. 성명(기관, 단체의 경우 그 기관, 단체명과 부서명, 직급명), 주소,
전화번호

다. 기타 참고사항

라. 보내실 곳

- 주소 : 3012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350 벅크빌딩 7층
광역교통정책과

- 전화번호 및 팩스번호 : 044-201-5053(팩스 044-868-8375)

- 이메일 : taehuil@korea.kr

4. 기타

○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(<http://www.molit.go.kr>) 정보마당→ 법령정보 → 입법·행정예고를 참고하여 주
시기 바랍니다.